

#최초시행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가입부터 보장까지

#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

## 목차

05	한눈에 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10	예술인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12	알고 가는 핵심 용어

	<b>사업주·예술인</b>
14	함께 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26	함께 묻는 FAQ

	<b>사업주편</b>
34	핵심 정리 사업주편
44	사업주를 위한 FAQ

	<b>예술인편</b>
50	핵심 정리 예술인편
62	예술인을 위한 FAQ

한눈에 보는



###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수급자격 제한 조건은?

자발적 이직 등  
(단,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는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예술인



## 사업주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12.10부터  
(시행일 이전 이뤄진 계약도 시행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단, 시행 전 종료된 계약은 소급적용 되지 않음)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가입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예술인과 맺은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부담



###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최대 80~90%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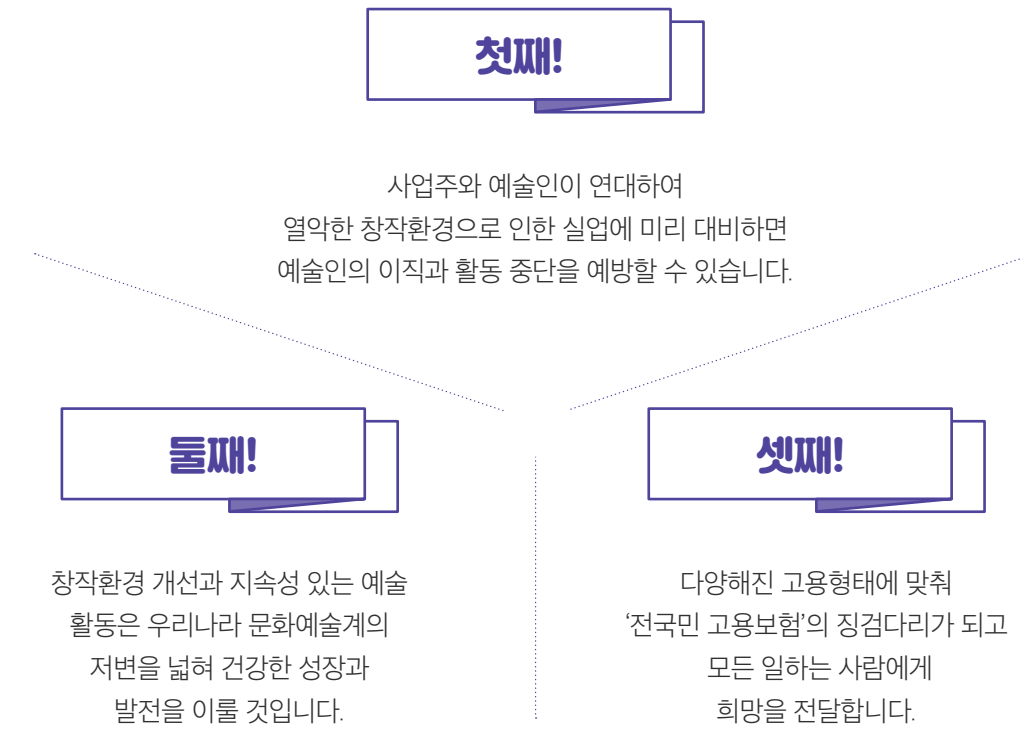
### 보험급여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공모한 사업주와 함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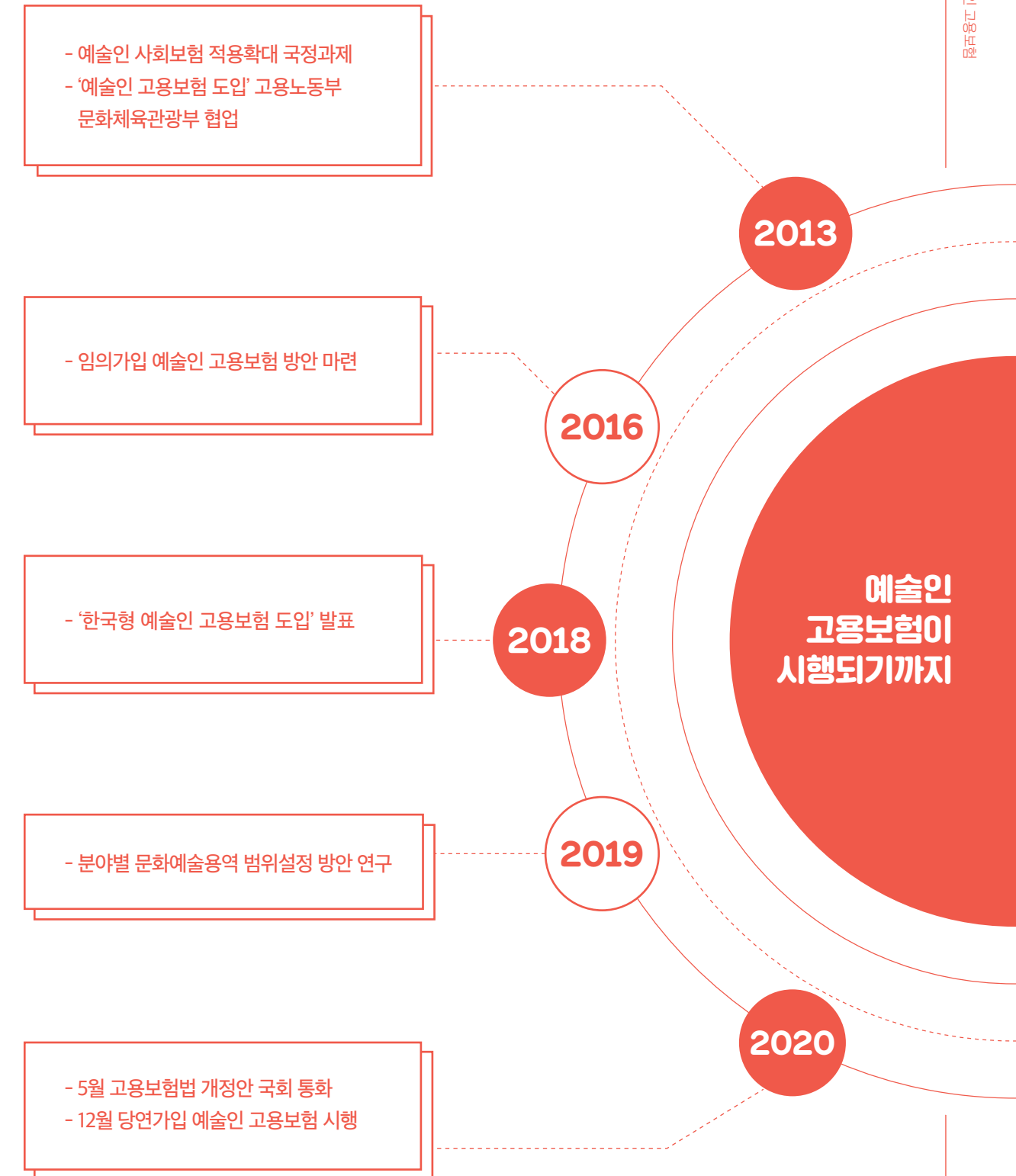


### 예술인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위기 대처를 위해 출발합니다.



<b>고용보험의 시작</b>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
<b>우리나라는 언제?</b>	1980년대 초 실업률이 높아지자 실업보험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7.1. 시행
<b>예술인 고용보험 최초 시행!</b>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12.10.부터 시행
<b>전 국민 고용보험의 비전</b>	세계적 고용충격 대비 2025년까지 제도 정비



## 알고 가는 핵심 용어

### 고용보험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그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 지원

## 보험 가입과 연관된 용어

### 고용보험 가입관리

예술인 고용보험의 자격신고·변동·상실,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를 말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가 담당

###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 보험에 가입된 사람. 여기서는 예술인

###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 예술인의 경우에는 피보험 기간과 동일

### 피보험기간

보험가입 기간을 뜻함. 예술인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총 기간

###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예술인이 구직급여 신청 가능

## 보험료와 연관된 용어

### 월평균소득

계약금액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

① (월단위로 계약 시)

$$\text{월평균소득} = \text{계약금액} \div \text{계약기간}$$

②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text{월평균소득} = (\text{계약금액} \div \text{계약일수}) \times 30$$

### 월평균보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예술인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소득금액×20%)를 뺀 금액을 계약상의 계약기간(월)으로 나눈 월 금액. 단, 계약기간(월)은 노무제공 월이 2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20일 미만인 경우 0개월로 계산함

### 기준보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 시 하한선이 되는 월평균보수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80만원. 기준보수보다 낮은 월평균보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 보험료율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요율

근로자와 동일한 요율인 1.6%가 적용되고,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씩 균등 부담

## 실업급여와 연관된 용어

### 이직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거나,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된 상태

### 기초일액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 단위의 소득금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업주·예술인

# 함께 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_고용보험\_바로\_알기

#문화예술용역\_관련\_계약\_들여다보기

#실전\_계약과\_가입

## 예술인 고용보험 바로 알기

### 1. ‘가장 궁금한 점’과 특징

-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합니다.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0.8%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
- ③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술인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
-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 취업하여 최저임금월액의 20% 미만이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 2. 근로자 고용보험과 비교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가입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일용근로자 포함 근로자
	제외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단, 단기예술인 소득기준 미적용) 65세 이후 신규	주 15시간 미만 65세 이후 신규
피보험자 관리	취득신고 등	사업주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경우 예술인	사업주
	가입기간(피보험자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노무제공기간)	근로계약 기간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 *보험료율)	보수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기준경비율 20% 적용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보험료 납부자	사업주	사업주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비자발적 이직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120~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시 일부 감액 혹은 전부 지급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 감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지급내용	출산전후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여부	미적용	적용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들여다보기

### 1. 문화예술용역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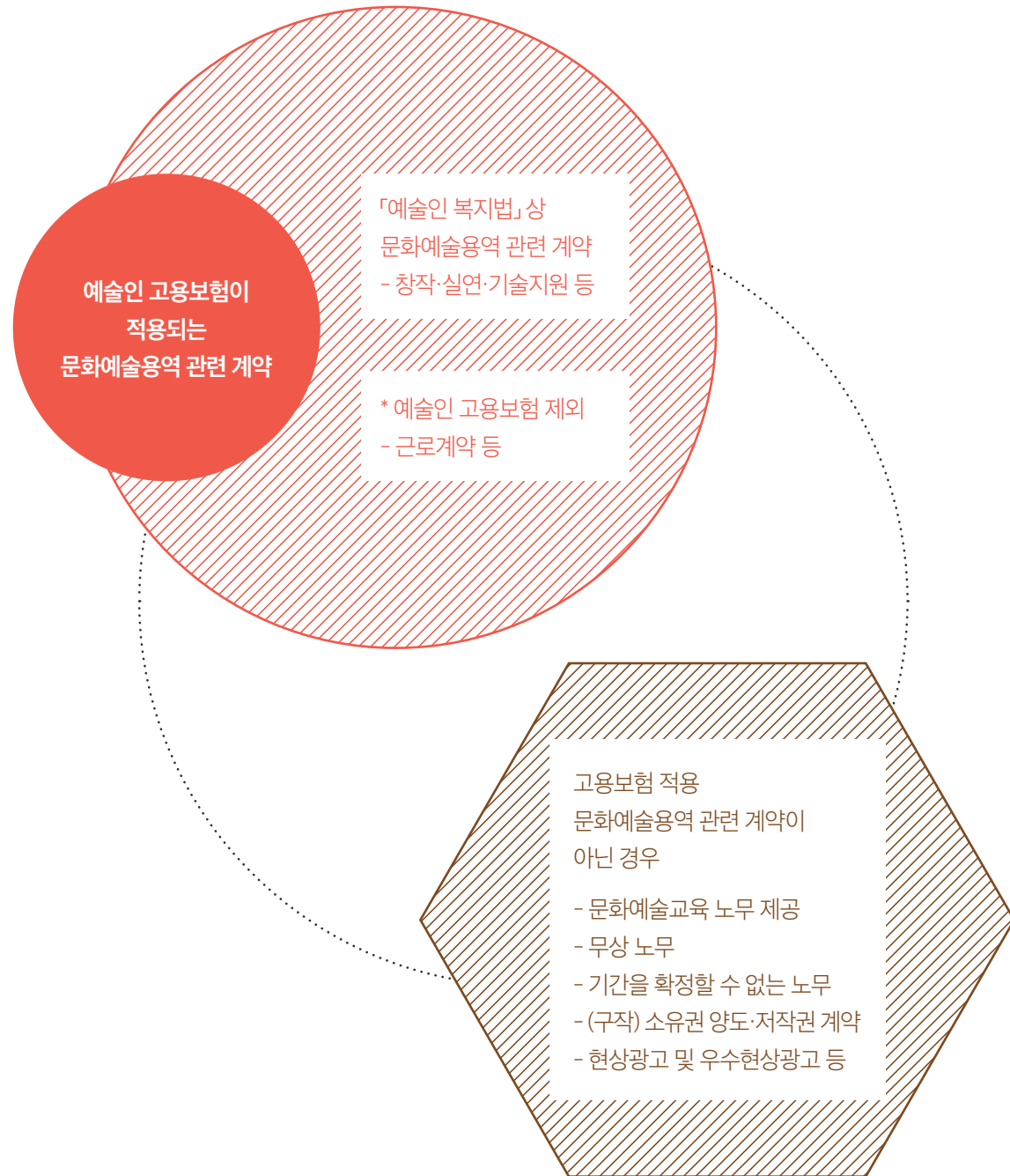
- ①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입니다.
- ② 예술인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노무에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 ③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역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지휘·감독 권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 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위 노무도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

### 2. 계약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닌 경우(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i) 근로계약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예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 됨
  -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12.9~)
- ii) 소유권 양도 계약
  -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구작의 소유권 양도
- iii) 저작권 계약
  -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이 포함된 저작권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 이와 달리 구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설정이나 배타적발행권설정 등 계약 및 현상광고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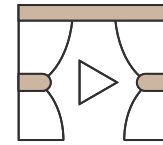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 3. 문화예술용역의 분야별 유형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인의 종사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 예술분야별 직무 예시를 통해 문화예술용역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연극 및 뮤지컬 분야 특정 뮤지컬 또는 연극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 ㉠ 대본 집필, 각색, 번역
- ㉡ 음악감독, 작곡, 작사, 편곡, 연주, 가창
- ㉢ 안무의 구성 및 연습 감독·지원, 무용
- ㉣ 제작, 기획 및 프로듀싱 관련 업무
- ㉤ 감독 및 연출·드라마터그 관련 업무
- ㉥ 연기
- ㉦ 무대·소품·특수장비·기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조명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등
- ㉨ 음향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녹음, 편집, 믹싱 등
- ㉩ 의상 및 분장(특수분장 포함)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영상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자막 관련 감독, 제작 및 운영 등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 <음악 및 공연분야>

2) 음악 및 음악 공연 분야 특정 음악 및 음악 공연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대중음악 포함)



- ㉠ 음악의 작곡, 편곡, 작사, 개사
- ㉡ 대본 집필, 각색, 번역
- ㉢ 지휘, 연주, 가창, 연기, 반주, 보컬 트레이닝 관련 업무
- ㉣ 안무의 구성 및 연습 감독·지원, 무용 실연
- ㉤ 음악감독, 예술감독, 연출·드라마터그 관련 업무
- ㉥ 제작, 기획 관련 업무
- ㉦ 무대·소품·미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기계·특수장비·기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조명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등
- ㉩ 음향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녹음(라이브, 레코딩 등), 편집, 믹싱 등
- ㉪ 의상 및 분장(특수분장 포함)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영상 및 자막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악기 조율
- ㉭ 기타 가호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음악 및 공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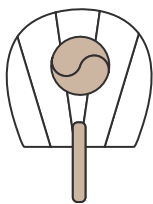
3) 무용 분야 특정 무용 공연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 ㉠ 안무의 구성 및 연습 감독·지원
- ㉡ 대본 집필, 각색, 번역
- ㉢ 음악감독, 작곡, 작사, 편곡, 연주, 가창
- ㉣ 무용, 연기, 지휘, 연주, 가창, 반주
- ㉤ 예술감독, 연출, 드라마터그 관련 업무
- ㉥ 제작, 기획 관련 업무
- ㉦ 무대·소품·미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기계·특수장비·기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조명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등
- ㉩ 음향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녹음, 편집, 믹싱 등
- ㉪ 의상 및 분장(특수분장 포함)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영상 및 자막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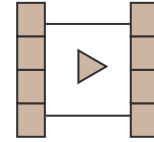
<음악 및 공연분야>

4) 국악 분야 특정 국악 공연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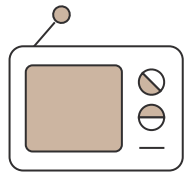
- ㉠ 음악의 작곡, 편곡, 작사, 채보, 작창
- ㉡ 대본 집필, 각색
- ㉢ 지휘, 연주, 가창, 연기, 반주, 무용, 연희
- ㉣ 음악감독, 예술감독, 안무, 연출, 드라마터그 관련 업무
- ㉤ 제작, 기획 관련 업무
- ㉥ 무대·소품·미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기계·특수장비·기술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조명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등
- ㉨ 음향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녹음, 편집, 믹싱 등
- ㉩ 의상 및 분장(특수분장 포함)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영상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5)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분야 특정 영화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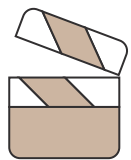
- ㉠ 시나리오 집필, 각색, 번역
- ㉡ 영화음악 관련 감독, 작곡, 작사, 편곡, 연주, 가창
- ㉢ 영화에 포함되는 안무의 구성 및 연습 감독·지원, 무용
- ㉣ 제작 및 프로듀싱 관련 업무
- ㉤ 감독, 연출, 기획 관련 업무
- ㉥ 연기, 무술, 스텐트 등
- ㉦ 촬영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편집 등
- ㉧ 미술·세트·소품·특수장비 관련 감독, 디자인, 제작, 세팅, 운영 등
- ㉨ 애니메틱스,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배경디자인 및 제작 등
- ㉩ 캐릭터 디자인 및 제작, 원화 제작, 동화제작, 컬러링 등
- ㉪ 모델링, 맵핑, 리깅, 비주얼이펙트/합성, 라이팅, 3D CG/FX, 합성 등
- ㉫ 조명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등
- ㉬ 음향 관련 감독, 디자인, 세팅, 운영, 녹음, 성우녹음, 편집, 믹싱 등
- ㉭ 특수효과·편집·DI(Digital Intermediate)·자막 등 영화 후반작업 관련 업무
- ㉮ 기타 가호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6) 방송 분야(드라마 분야) 특정 드라마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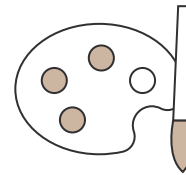
- ㉠ 드라마 구상 및 대본 집필, 자료조사 등
- ㉡ 드라마에 포함되는 음악 관련 작곡, 작사, 선곡, 편곡, 제작 등
- ㉢ 연출 관련 업무
- ㉣ 연기, 무술, 보조출연 등
- ㉤ 제작 및 프로듀싱, PPL 관련 업무
- ㉥ 촬영 관련 감독 및 보조, 장비 운영, 데이터 매니저 등
- ㉦ 조명 관련 감독 및 보조, 발전기사 등
- ㉧ 음향 및 동시녹음 관련 업무
- ㉨ 미술 관련 감독 및 보조, 세트, 인테리어 소품 등
- ㉩ 의상 디자인, 스타일리스트, 분장미용 및 특수분장 등
- ㉪ 현장 특수효과 연출 및 VFX, DI 등 후반작업 특수효과 관련 업무
- ㉫ 편집 관련 감독 및 보조, 자막, PI 등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방송 분야(비드라마 분야) 드라마 이외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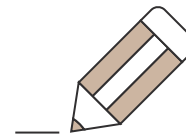
- ㉠ 프로그램 기획, 구성, 대본 집필, 자막 등
- ㉡ 연출, 카메라, 동시녹음, 조명, 분장, 무대감독, 진행보조, 특수촬영 등 촬영현장 진행 관련 업무
- ㉢ 출연자, 연기자, 진행자, 성우
- ㉣ 스튜디오 세트 디자인, 조립 및 제작 등
- ㉤ CG, 음악감독, 녹음 기사, 편집 관련 감독 및 보조 등 종합편집 관련 업무
- ㉥ 프리뷰어, 싱크 등 가편집 관련 업무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7) 미술 분야 특정 미술작품의 창작, 전시, 유통 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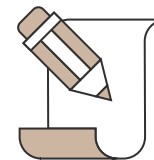
- ㉠ 신작 제작, 구작 개변
- ㉡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 ㉢ 평론, 비평, 번역
- ㉣ 도록 및 전시 관련 상품의 디자인 및 제작 관련 업무
- ㉤ 안무, 실연
- ㉥ 전시공간 디자인, 미술품 설치
- ㉦ 미술품 창작 및 전시 관련 기계·특수장비·기술·음향
- ㉧ 촬영, 녹음, 편집
- ㉨ 전시 해설, 전시 연계 교육,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업무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8) 문학 분야 특정 문학작품의 창작과 유통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 ㉠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아동문학의 신작 창작, 구작 개변
- ㉡ 비평, 번역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9) 만화·웹툰 분야 만화·웹툰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노무 예시



- ㉠ 작가(글, 그림, 채색 등)
- ㉡ 교정기사
- ㉢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업무
- ㉣ 후가공 업무
- ㉤ 기타 ㉠~㉣에 정하는 바에 준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 행위

# 실전 계약과 가입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화예술계 계약 체계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 주체는

예술인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 계약 유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① 계약 당사자에 따른 2가지 유형 구분

- 제작사 등과 예술인 개인의 계약
-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

### ② 제작사-예술인 개인-전속 매니지먼트사 3자 계약의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간에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제작사'가 사업 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 ③ 팀의 대표가 제작사와 일괄 수주 계약을 맺는 경우

'팀 대표의 노무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 상 사업주가 정해짐

- 팀 대표가 팀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 제작사가 사업주
- 팀 대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 팀대표가 사업주
- 위 사업주의 1차적인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당사자로, 팀 대표가 팀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표면적으로 팀 대표를 사업주로 해석

### ④ 개인 간의 계약에서 사용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자연인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노무제공이 이뤄져서 실질적인 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 개인이 사업주가 됨

-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적용

### ⑤ 제작사 등과 사업체의 계약에서 하청 혹은 재하청 받은 사업체와 예술인 개인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사업주는 각각 하청 혹은 재하청 사업체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며, 원수급인이 하나이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도급사업 특례)



# FAQ

## 사업주·예술인 함께 묻는 FAQ

1. 일반 고용보험과 다른 점
2. 누가 사업주인가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등
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예외
5. 계약 내용에 따른 적용 여부
6. 시행일과 적용일
7. 보험료 계산

## 1. 일반 고용보험과 다른 점

### Q. 기존의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에만 한정됩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달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입니다. 예술인 노무 특성을 고려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 '일정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허용' 등이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릅니다.

### Q. 예술인의 수입이 매월 일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산정하나요?

A. 사업주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매월 지급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예술인부담분 고용보험료(지급된 금액 x 기준경비율 0.8 x 0.8%)를 원천공제합니다.

### Q. 1년 내에도 짧은 실직 기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한 달 수입이 최저 임금도 안되고요. 그럴 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업급여 지급 기준(가입 후 최소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충족할 경우, 짧은 실업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다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최저임금월액 20%)에서 소득 전부를 인정하거나 혹은 구직급여(실업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때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2. 누가 사업주인가

### Q. 예술인이 복수의 일에 참여할 경우 보험가입을 해주는 사업주는 누가 되는 건가요?

A. 예술인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일자리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복수의 당연가입 일자리에서 일하는 예술인의 경우 이중 취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로 다른 사업주와 했을 때, 각 사업에서 모두 가입되며 각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월평균 보수에서 산정 및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Q. 참여한 공연의 주최사와 주관사가 다른데, 계약은 주관사와 맺고 공연의 최종 권한은 주최사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주는 어디입니까?

A. 주관사는 주최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청업체이고, 예술인이 하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관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주최사가 공연의 최종 권한을 가졌다하더라도 주관사에 일부 업무를 하청한 것이므로 하청업체로서 주관사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 관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최사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계약이 주최사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 Q.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한편은 피고용자이고 다른 한편은 고용을 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 A와 예술인 B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B가 본인의 작업을 위해 보조작가 C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B는 '다른 사람인 C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B가 C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했다면 B는 사업주로서 의무를 갖고 C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연인이 아닌 '사업'에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C와 개인 간 계약을 체결했다면 C 역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애초에 사업주 A와 예술인 B가 계약을 할 때, 보조 작가 C의 사용을 포함한 계약을 맺거나, C와도 별도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어서, B와 C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해야 합니다.

###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등

**Q.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 노무제공 기간과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갖고 예술인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계약 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계약을 해야합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서면계약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76p 참조)

**Q.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한 계약기간이나 보수지급방식에 대해 미비하다면 수정계약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Q. 사업주가 계약서를 쓰려고 하지 않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으로 보수를 낮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이유로 보수를 낮게 책정할 경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예외

**Q. 프리랜서로 활동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요건 충족 시 당연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Q. 예술강사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문화예술교육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강사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강사가 별도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중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다양한 직종에 몸담고 있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니까? 저는 전문 무용수 이면서, 예술강사로도 활동하고, 연습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A. 예술강사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셔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는 경우만 적용받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라서 프로젝트 건당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프로젝트 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1일~5일까지이고, B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3일~10일까지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별로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A 프로젝트(1월 1일~5일): 5일, B 프로젝트(1월 3일~10일): 8일

## 5. 계약 내용에 따른 적용 여부

### Q.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 계약기간과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제공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해당기간의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추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관련 당사자 사이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 전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일 노무제공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신작 또는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술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완성해 놓은 구작의 경우 새로운 노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기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완성된 구작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양도에 대한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 Q. 이미 완결된 웹툰에 대해 유료수익분배, 오픈마켓에 작품을 올려두고 그 수익을 사이트와 나누는 구조, 해외에서 연재하는 경우, 그리고 출판 계약에서 인세를 받는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나요?

A. 기존의 저작물(구작)에 대한 저작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 설정이나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이용허락 등은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저작물(신작)이나 기존 저작물(구작)의 개편(수정, 각색 등)을 위한 노무제공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유권 양도 혹은 저작권 관련 내용과 '노무제공' 계약의 내용적 분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Q. 시나리오 작가는 통상 월급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신작의 창작이나, 기존 작품의 개편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제작사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은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 계약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가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순수한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시행일과 적용일

### Q.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11일~2021년 9월 10일(1년)까지 계약 체결을 하고, 2020년 12월 10일~2021년 9월 10일까지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월로 환산하여 9.07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2021년 1월~8월(8개월) + [(22일 + 10일)/30일] = 9.07개월)

## 7. 보험료 계산

### Q. 참가하는 프로젝트마다 보수가 각각인데, 보험료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A. 각각 프로젝트의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프로젝트를 40일간 수행하고 300만원을 받고 B프로젝트를 35일간 수행하고 250만원을 받았다면,  
 A 프로젝트 보험료(38,400원) = 300만원 × 0.8 × 1.6%(사업주와 예술인 0.8%씩 균등 부담)  
 B 프로젝트 보험료(32,000원) = 250만원 × 0.8 × 1.6%(사업주와 예술인 0.8%씩 균등 부담)  
 이렇게 각각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 Q.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2~3년 일하는 경우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나요?

A. 일반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2~3년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의 총 개월 수로 용역비 전체 금액을 나누어 월평균 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핵심 정리 사업주편

#사업주와\_함께\_예술인\_고용보험\_따라가\_보기

#예술인\_고용보험\_적용\_시작부터\_종료까지

#보험료\_계산부터\_납부까지

#지원제도\_알아두기

#사업주를\_위한\_FAQ





# 사업주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따라가 보기

## 1. 당연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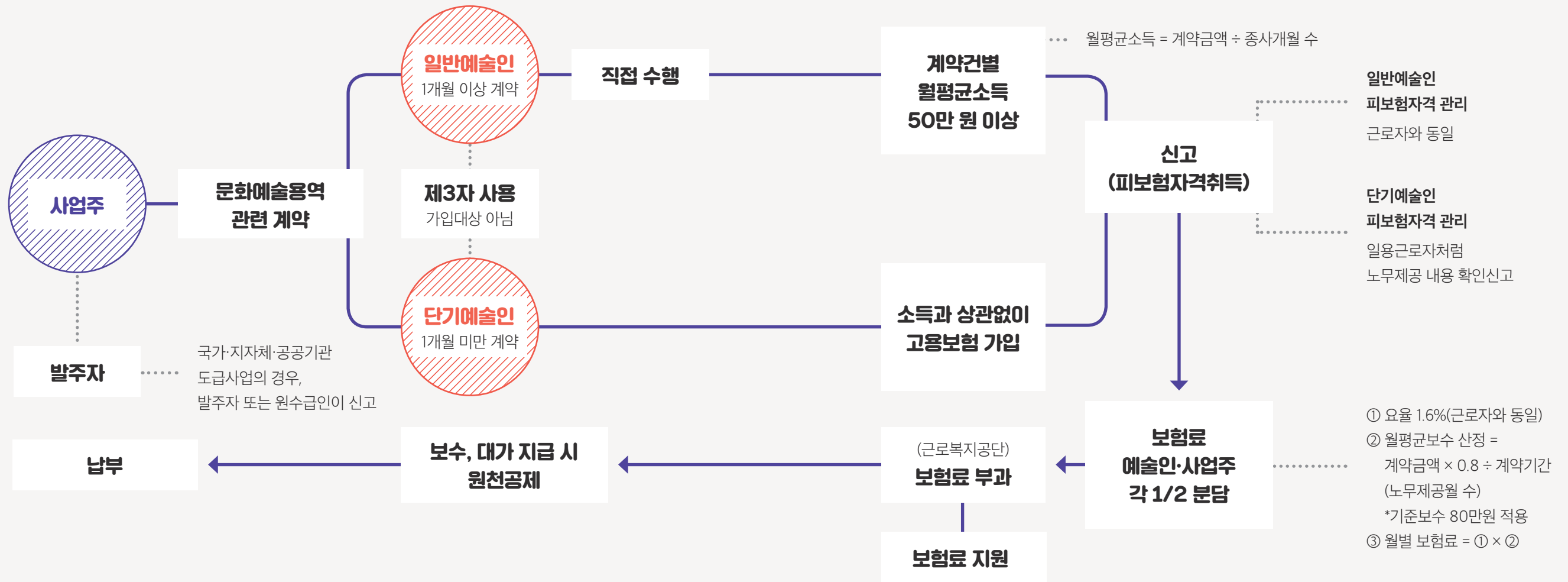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가입  
 ① (월단위로 계약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②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 2.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1회)

최초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제출

## 3. 고용보험관리번호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상실 신고

공단에서 부여하는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 4. 매월 보험료 부과, 납부(다음달 10일까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 부과  
 보험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5.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

## 6. 실제 소득 기준 고용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하한액 보험료 유지 및 보험료 정산(보험료 추가납부·총당·반환)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하기

## 1.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 ①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됩니다.
- ② 예술인들은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그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③ 예술인과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적용되며 사업주에게 각종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인 것처럼, 사업주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 등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보험료의 납부 등을 해야 함
- ④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이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공지하고 보험료를 부과  
- (월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적용	미적용
i)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i)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ii)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ii)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iii)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iii) 65세 이후에 신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iv) 하나의 사업주와의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 사업장 신고하기-성립신고

-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먼저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1회 해야 합니다.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필요한 것이 아니며, 처음 한번만 신고
- ② 처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에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있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예술인명부 등) 함께 제출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 제출방법: 우편, FAX, 직접 방문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처리하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리번호(예시 \*\*\*-\*\*-\*\*\*\*\* 형식 11자리 숫자)를 부여. 이후 해당 관리번호를 통해 각종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보험료 신고

##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 ① ‘계약기간’에 따라 신고합니다.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일반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년 월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② 일반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개별 사항을 신고합니다.  
-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③ 월평균보수액, ④ 자격취득일(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따른 처음 노무제공일), ⑤ 계약종료 연월(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⑥ 예술인의 직종 부호, ⑦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6’, 사유를 ‘25’로 기재

## 예술인의 직종부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4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6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③ '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매일 노무제공 여부 표기. 일자별 노무제공은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

※ 단기예술인 예) 단역배우, 무대장치 크루, 조명·음향기사 등 공연·영상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

④ 신고 기한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험료 계산부터 납부까지

## 1.

## 고용보험료와 기준보수

①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계약금액 × 0.8 ÷ 계약기간) × 실업급여율 1.6%

-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술인은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기준경비율 20% 일율 적용함(계약금액 × 0.8). 계약기간(월)은 노무제공 월이 2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20일 미만인 경우 0개월로 계산함

예) 계약 금액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 20%=60만원을 공제한 240만원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 보수

②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③ '일반예술인'은 계약기간동안 월평균보수로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매월 납부했다가, 계약 종료 시 최종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공단이 월평균보수에 실업급여율을 곱한 금액을 '월별보험료'로 매월 산정·부과

④ 기준보수(월평균보수 하한액) 80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예술인의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예술인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달리 하한액이 없기 때문에 월평균보수가 낮으면 실업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하한액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이 되게 함

- 월평균보수가 60만원인 경우, 기준보수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월보험료 12,800원)

⑤ '단기예술인'은 매월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단기예술인은 별도 정산 절차 없음. 매월 노무를 제공한 날짜, 노무제공에 따른 월 소득의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

예) 예술인 A가 사업장 B에서 3월, 5월, 8월에 각각 노무를 제공하고 80만원, 120만원, 3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각각(경비 20%를 뺀 금액) 64만원, 96만원, 24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납부하면 됨

-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음

## 2. 납부

- ①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함께 납부합니다.
  - 보험료 납부시기와 원천공제 시기는 다르므로 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
- ② 공단이 매월 산정·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③ 실제 납부와 원천 공제 예시

사업주 A와 예술인 B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 총 보수 600만원 - 기간 2021.3.1.~7.31.(5개월)	
<b>매월 보험료 납부</b> (예술인의 월보험료 포함 15,360원)	공단은 매월 사업주 A에게 B의 고용보험료를 월평균보수 96만원(총 보수 600만원에서 120만원(600만원 × 20%) 공제 후 480만원을 월평균보수 산정 총보수로 삼고, 480만원을 기간 5개월로 나누어 96만원이 됨)으로 산정하여, 월보험료 15,360원 (= 960,000원 × 1.6%)을 부과. 사업주 A는 지급하는 보수와 관계없이 예술인 B의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됨
<b>원천공제</b> - 계약금 지급 시 12,800원 공제 - 중도금 지급 시 19,200원 공제 - 잔금 지급 시 6,400원 공제	사업주 A는 예술인 B에게 3월, 5월, 7월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총 보수 600만원을 각각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각각 경비 공제율(20%)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160만원, 240만원, 80만원에 대한 예술인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 12,800원(1,600,000원×0.8%), 19,200원(2,400,000원×0.8%), 6,400원(800,000원×0.8%)을 원천공제하면 됨

- ④ 계약 종료(피보험자격상실) 또는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정산과 같음
  - 전년도에 이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된 예술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기예술인도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대상에 포함
  -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정산한 결과 예술인의 보수총액이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산정

## 지원제도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 납부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2021년 월평균 220만원 이하 지원)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 서면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4부)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2층  
 전화 02-2097-9250  
 팩스 0502-223-3203



FAQ

# 사업주를 위한 FAQ

1. 월평균소득 산정
2. 월평균보수 계산
3. 보험료 산출
4.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일 때
5. 보험료 지원
6.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 1. 월평균소득 산정

**Q.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월평균소득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 등 공제와 관계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상 문화예술활동(노무)에 따른 총 대가(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1.3.1.~7.31.(5개월) 출연계약을 하고 보수가 400만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 5 = 80만원이며, 이 금액은 5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

- ①(월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②(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 2. 월평균보수 계산

**Q.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각각의 월평균소득이 30만원, 60만원, 90만원,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보험료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 A. 월평균소득이 3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인 50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이 60만원이면 경비 12만원(60만원 × 20%)을 공제하고 48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인 8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경비 공제 후 금액은 50만원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됨)
  - 월평균소득이 90만원이면 경비 18만원(90만원 × 20%)을 공제하고 72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도 월평균보수 하한액인 80만원 미만이므로, 월평균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경비 20만원(100만원 × 20%)을 공제하고 8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경비 40만원(200만원 × 20%)을 공제하고 16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160만원이 됩니다.

월평균소득	30만원	60만원	90만원	100만원	200만원
경비(20%)	고용보험 미적용	12만원 (60만원 × 20%)	18만원 (90만원 × 20%)	20만원 (100만원 × 20%)	40만원 (200만원 × 20%)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월평균 50만원 미만)	48만원 →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72만원 →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80만원	160만원

# 3. 보험료 산출

**Q. 월급여 형태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 A가 예술인 B와 2021년 3월 1일~7월 31일(5개월) 동안 총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3월에 계약금 200만원, 5월에 중도금 300만원, 7월에 잔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업주 A는 월평균보수 96만원(600만원 × 80% ÷ 5개월)를 기준으로 월별보험료 15,360원(96만원 × 1.6%)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예술인 B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보수에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뺀 160만원(200만원 × 80%), 240만원(300만원 × 80%), 80만원(100만원 × 80%)을 기준으로 예술인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 12,800원(160만원 × 0.8%), 19,200원(240만원 × 0.8%), 6,400원(80만원 × 0.8%)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고 예술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Q. 예술인과 계약 당시에는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보다 적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추후 예술인이 계약건별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A. 예술인 A가 ① 사업주 B와 2021년 3월 1일~5월 30일까지 월평균보수 30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② 사업주 C와 2021년 3월 25일~6월 10일까지 월평균보수 35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 예술인 A의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은 2021년 3월 25일~5월 30일입니다. 이 경우 예술인 A는 2021년 3월 25일~5월 30일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합산에 의한 신청은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 이때 보험료 산정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B와 사업주 C가 지급하는 실보수 30만원과 35만원으로, 각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게 됩니다.



**Q. 단기예술인의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술인 A가 사업주 B와 2021년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노무를 제공하고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C와는 3월 20일, 3월 22일 노무를 제공하고 15만원의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A는 단기예술인이므로 소득제한에 따른 적용제외 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매월 노무를 제공한 날짜, 노무제공에 따른 월 소득의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B는 30만원의 보수에서 비용을 공제한 24만원을 기준으로 3,840원(24만원 × 1.6%)의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단기예술인 A에 대해서는 0.8%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1,920원을 원천공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 C도 15만원의 보수에서 비용을 공제한 12만원을 기준으로 1,920원(12만원 × 1.6%)의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단기예술인 A에 대해서는 0.8%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960원을 원천공제하면 됩니다.

## 4.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일 때

**Q. 단체 대표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이지는 하나 종종 저도 같이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단체의 대표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가 하청을 받아 공연을 할 때 대표가 함께 공연에 참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대표 역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청이 사업주가 되어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외주제작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면서 혼자 프리랜서 PD로 다른 제작사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 평소 함께 일하는 조연출과 같이 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조연출 '사용'하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을 맺을 때 '조연출 사용을 명시'하면 두 분 모두 다른 제작사 등을 사업주로 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보험료 지원

**Q. 영세한 예술단체·사업체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 예술인 및 예술단체·사업체의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과 그 사업주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6.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만약 사업주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으면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가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핵심 정리 예술인편

#예술인과\_함께\_예술인\_고용보험\_따라가\_보기

#고용보험\_가입부터\_구직급여\_받기까지

#구직급여\_자세히\_보기

#출산전후급여\_알아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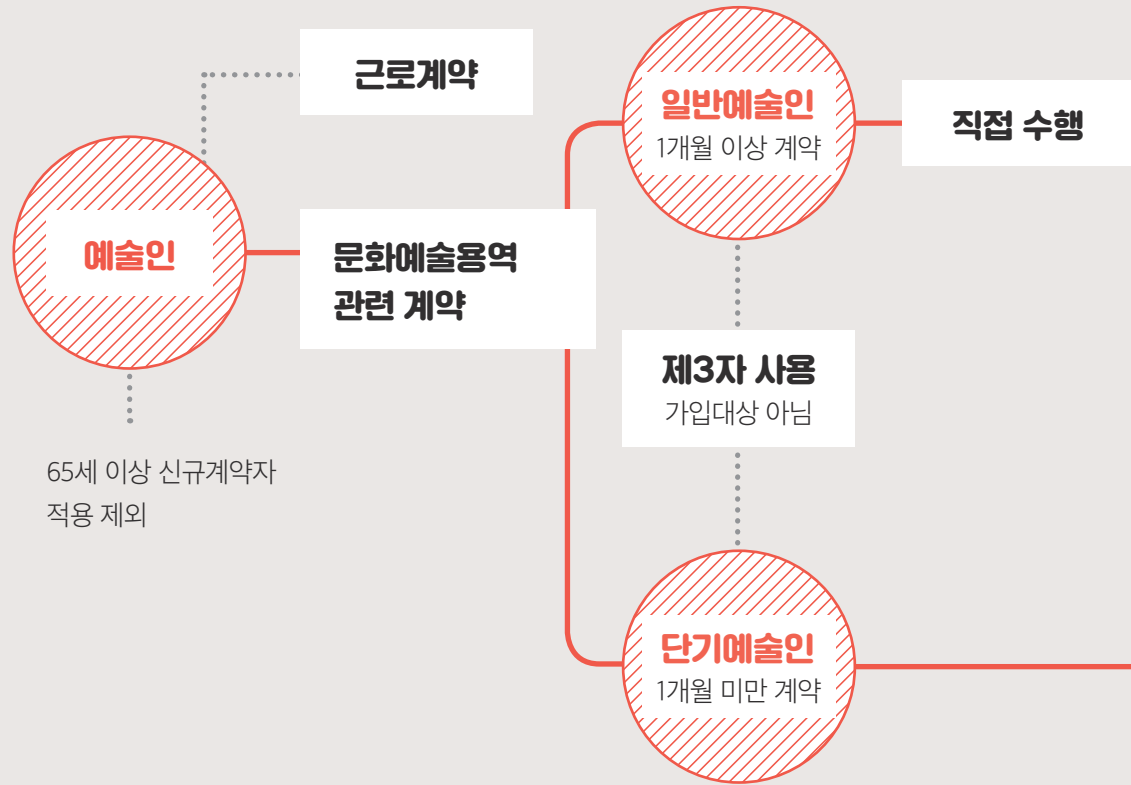
#예술인을\_위한\_FAQ





# 예술인과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따라가 보기

## 1. 계약 체결



## 2. 소득 조건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가입대상 아님)
-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소득관련 적용 안 함

## 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이 직접 신청

사업주가 신고

피보험자격취득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근로자 + 예술인  
예술인 + 예술인

## 4. 구직급여 받기

구직급여 신청

**단기예술인**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노무제공일 수 10일 미만 혹은  
14일간 연속 노무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

**일반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그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 유지)

실업  
(피보험자격상실)

출산전후급여

- 출산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 후 12개월 내 신청  
- 출산 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 90일간 지급

수급 제한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 자영업활동

대기 7일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는 4주

소득활동 인정

고용보험 미적용대상 일자리에서  
최저임금월액의 20% 수준까지

지급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 근로자와 동일)  
- 120일~270일 지급

기초일액 =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 ÷ 해당기간 총일 수

# 고용보험 가입부터 구직급여 받기까지

## 고용보험 가입

### 1.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예시는 17~25p 참고)

※ 예술인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여부	
O	X
i)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인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  ii) 위 성격의 노무는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  iii) '작품 활동의 일부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기계적 단순 노무도 해당	i) 노무 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무상으로 제공 되는 노무  ii)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  iii)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단순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 할 수 있는' 노무
iii)의 예) 공연 종료 후 철거 인력에 의한 기계적인 무대 철거 행위는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공연 중 무대 크루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대의 설치나 변경 등은 문화예술용역에 해당	

②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적용 예외

- (연령제한) 65세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 (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

#### ⑥ 연령과 소득 적용 제외가 아닌 경우

- (연령) 65세 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65세 이후 재계약하는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예) 64세 예술인 A가 65세가 되는 해인 5.30. 사업주 B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6.1. 곧이어 다른 사업주 C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면 예술인 A는 65세가 되어도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 (소득)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적용, 혹은 하나의 계약은 50만원 이상이고 동일 기간 내 다른 계약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의 계약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이중 취득 가능)
- (단기예술인의 소득)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 2.

#### 중요!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피보험자격 신고)을 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당연가입 원칙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야 함.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음
-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 증명 자료 첨부

② 합산한 소득(기간 중 50만원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할 때는, 예술인이 직접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위 취득 신청은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함

### 3. 알아두면 좋은! '맞춤형'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징

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중취득 가능 여부	
O	X
i) 근로자-예술인: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자와 예술인(일용근로자와 단기예술인)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i) 근로자-근로자: 둘 이상의 사업에서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되면 근로자 피보험자격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
ii) 예술인-예술인: 둘 이상의 사업에서 예술인으로 각각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ii) 예술인-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 가입)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단, 일용근로자나 단기예술인은 예술인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선택할 수 있음

②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 허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시 '자발적 이직'은 제한 요건.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혹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③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이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월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구직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

### 구직급여 받기

#### 4.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

①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함
- 기준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연장 (최대 3년)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i)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월'을 기준으로 함. 월의 중간에 시작과 종료があれば 각 월의 종사 기간의 합을 30으로 나누어 산정  
 예) 3.10.~6.20.까지 노무를 제공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4월과 5월 2개월', [22일(3월) + 20일(6월)] ÷ 30 = 1.4개월, 둘을 합하여 3.4개월

ii) 다수의 고용형태에서 일했을 때,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예) 이직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6개월, 근로자 100일(유급근로) 종사한 경우-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3/9개월 미충족. 이것을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해보면 (60일 = 3/9 × 180일) 근로자로서 그 이상 일 한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iii) 단기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인 월의 모든 노무제공일을 합하여 22일로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1	15	12	10	10	5
피보험기간	1월	1월	1월	(10 + 10 + 5)/22 = 1.1개월		
	3개월		1.1개월			

iv)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직일 이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그러나 수급자격 신청은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 제한에서 예외
    - i)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ii)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④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⑤ 단기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했을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
- 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5. '구직급여 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과 부정수급 제재

①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소득 활동의 금액과 내용에 따른 인정 여부

O		X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최저임금월액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	i) 소득활동이 당연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예술인으로 종사, 단기예술인으로 종사)인 경우		
ii)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구직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	ii) 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예) 최저임금의 20%(13,744원 = 8,590 × 20% × 8시간)를 월 단위(30일) 금액(412,320원 = 13,744원 × 30일)으로 한 소득활동인 경우 인정

- 수급기간 중 인정되는 소득활동 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
- ②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벌칙을 받습니다.
  - 처벌대상(부정수급 한 자와 공모한 사업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구직급여 자세히 보기

## 1. 대기 기간

- ① 이직 이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입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대기기간 7일 + 실업인정일 8일)로, 이때부터 구직급여 지급
- ②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 4주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지급 금액

- ① 구직급여 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직 당시의 보수가 기준보수(80만원) 일액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으로 산정
- ②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기준보수(80만원)의 60%인 48만원이 실질적 하한액으로 작용

## 3. 지급 기간

①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합니다.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출산전후급여 등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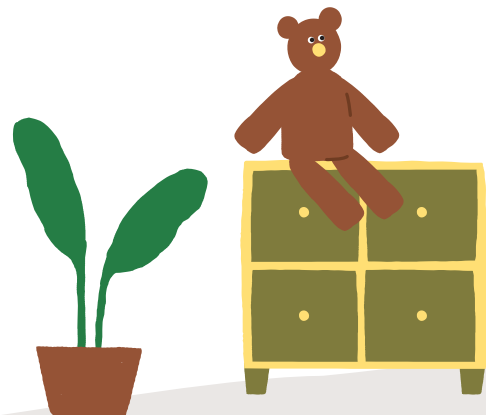
## 1.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조건

예술인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②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 ③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름

## 2. 지급 금액과 기간

- ①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입니다.
  -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상한액은 '20년 기준 월 200만원, 하한액은 60만원)
- ②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예술인을 위한 FAQ

1. 예술인 고용보험의 장점
2.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 고용보험
3. 소득과 합산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5. 1개월 미만 단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6.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
7. 실업 시점
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9.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 예술인 고용보험의 장점

### Q.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A. 예술인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직·실업 상태에서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i)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ii)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활동하고 iii)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면 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기초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만의 특징은 ①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예술인 + 근로자, 예술인 + 예술인)' 인정, ② '소득 합산'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③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허용, ④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부 소득활동 인정'입니다.

## 2.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 고용보험

### Q.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으면 예술인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나요?

- A.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 여부보다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문화예술활동(노무)인지가 고용보험의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3. 소득과 합산

### Q.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예술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요?

- A. 그렇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예술인의 소득이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Q. 계약 당시 월평균소득 60만원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다음해 정산해 보니 사업주의 소득 감소 등 이유로 실제 월평균소득 40만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취소되나요?

- A. 취소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고용보험 적용기준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면, 정산 결과 월평균소득이 적용기준 소득 이하가 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유지되어 피보험기간이 인정됩니다.

### Q.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산출하나요? 소득이 없는 달에도 보험료를 내는 건가요? 월급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연 후 한꺼번에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 A.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의 노무제공의 대가(보수 또는 소득)에 대해 고용보험료율 1.6%를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율 0.8%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주가 노무제공대가를 지급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로 산정해서 매월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며, 예술인이 계약이 종료되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그때 총 지급된 보수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 Q. 2021.1.1.~5.30.(약 5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만원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가, 3.5.~6.30.(4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0만원인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언제부터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두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인 5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3.5.부터 합산한 소득이 50만원 이상 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직접공단에 소득 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2021.3.5.)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이 신청은 합산한 적용기준 소득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 이후 신청하면 소득합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 합산의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고, 6.1.에 합산소득이 50만원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 합산에 의한 피보험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Q.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A. 프로젝트 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1일~15일까지이고, B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10일~20일까지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20일 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Q.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해서는 허용합니다. '예술인'으로서 i)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ii)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는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기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임의 가입)도 동시에 취득하면, 이때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만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은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 1개월 미만 단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Q. 매일 공연장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하고 당일 보수를 받습니다. 어떤 달은 수입이 50만원 이상 되지만, 어떤 달은 50만원이 안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네. '단기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제공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인들의 작업을 몇 시간 정도 도와주는 알바 개념으로 일한 것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합니다. 11일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합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거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피보험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서면계약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 6.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

**Q.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계약서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구두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 노무제공기간과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필요하며, 이런 것을 갖춰서 예술인 스스로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서면계약체결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사업주 또는 예술인 본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유효합니다. 그러니 용역계약을 맺는다면 반드시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명확한 계약 기간 및 보수 금액을 명시한 후 그것을 근거로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7. 실업 시점

**Q. 수입이 없어지는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

A.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후 최소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이중취득한 경우 24개월간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서 가입되어야 하며, 수급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Q. 특정 단체나 사업체에 소속 혹은 고용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었을 때 적용됩니다. i) 자기를 위한 노무제공이나 ii)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무제공 iii) 무상 노무제공 계약 iv)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문학인으로서 작품의 출간을 위해서 출판사나 플랫폼으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고, 집필한 원고를 인도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시 이력이 없는 대학원생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소득이 발생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증명은 어려우나 예술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과 처음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인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 9.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Q. 예술인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어시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시스턴트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A. 예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연인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여 실질적인 업(業)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실질적으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어시스턴트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시스턴트를 사용한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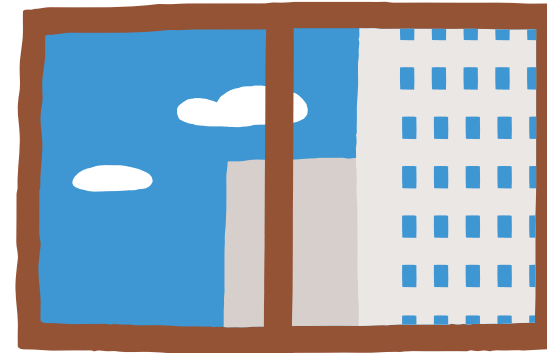
**Q.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여 실질적인 업(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지속적 반복 수행'의 기준이 있나요?**

A. 지속적·반복적 노무 수행은 개별적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고용을 지속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이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개별 판단을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 부록

1.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담당 기관
2.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도급사업 특례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유의 사항
4.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5. 각종 양식 -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6. 각종 양식 - 예술인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담당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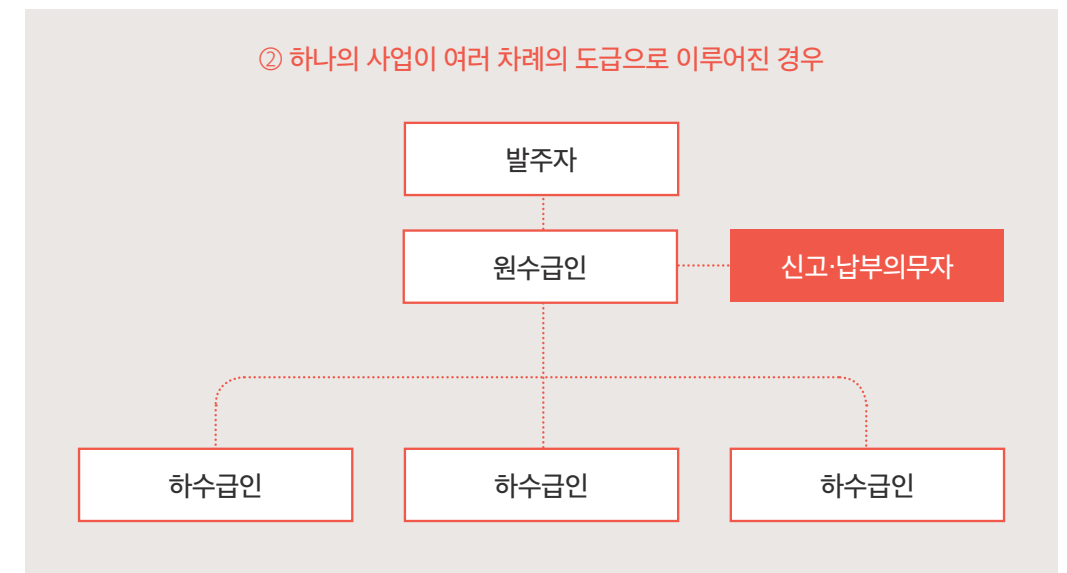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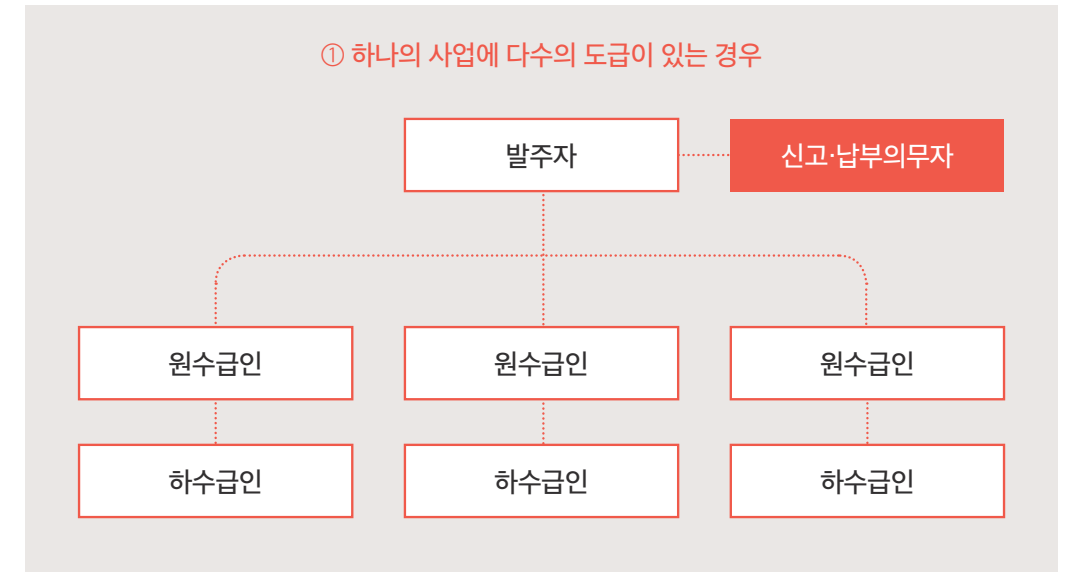
기관	대상	주요 업무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해지, 보험료 납부금액 관련 문의가 있을 때  · (예술인) 소득을 합산하여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거나, 가입이력을 확인할 때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 · 피보험자격 관리 · 홈페이지 <a href="http://www.kcomwel.or.kr">www.kcomwel.or.kr</a> 대표번호 1588-0075 · 예술인고용보험 전담팀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4부) 대표번호 02-2097-9250 대표팩스 0502-223-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주) 보험료 고지서, 납부 관련 문의가 있을 때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 홈페이지 <a href="http://www.nhis.or.kr">www.nhis.or.kr</a> 대표번호 1577-1000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예술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 가입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사업주,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자료, 설명 등이 필요할 때 · 서면계약 체결, 불공정계약 관련 지원이 필요할 때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및 홍보 · 예술인 신문고 운영 · 홈페이지 <a href="http://www.kawf.kr">www.kawf.kr</a> 대표번호 02-3668-0200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도급사업 특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

- ①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있는 경우
- ②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의 보험료를 원천징수·납부하며, 이를 위한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합니다.



\* 구체적 사례는 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발간 문화체육관광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자료실 확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유의 사항

유의 사항	핵심 내용
서면계약 체결 의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액,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고 받음(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li> <li>-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조사권·시정명령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음</li> <li>- 계약서 3년간 보존 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li> <li>- 계약의 효력으로 당사자들은 채권·채무 관계라는 법적 관계 및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권리와 의무 정확히 명시</li> <li>- 계약서에 고용보험 가입이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당연 가입</li> </ul>
표준계약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자 견본계약서로 계약 체결의 가이드라인 역할</li> <li>- 분야별로 미술, 영화, 대중문화, 공연예술,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저작권, 방송,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음(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li> <li>-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함</li> <li>-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li> </ul>
불공정행위 금지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함</li> <li>예) 전체 계약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벌 약정은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무효</li> <li>-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li> <li>- 불공정한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 예술창작활동 방해, 예술인의 정보 부당 이용 등은 예술인복지법 상 불공정행위로 규정</li> <li>-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조치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배제</li> <li>-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견본 계약양식입니다. 예술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양식의 활용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동 양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양식에 따라 계약된 항목(예: 노무제공에 따른 계약금액)이외의 권리(예: 저작권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양식에 상관없이 별도의 계약(부속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즉, 동 양식이 정한 계약항목(계약금액 등)은 저작권 등 별도의 권리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적인 감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 동 양식은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사업주	업체명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주 계약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예술인	부 계약 당사자(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예술인	부 계약 당사자(2)**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이 1인일 경우 주 계약당사자란만 작성  
 \*\* 동 계약이 정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을 보조하여,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완성을 위해 일정 부분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총칭함(주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을 보조하는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수의 부 계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사업주는 계약의 상대방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등 피보험관리를 위해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과 복수의 문화예술용역이 포함된 일괄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의 용역 외에 이를 보조하는 예술인(부 계약당사자)의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용역을 담당하는 예술인 또한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하나의 계약서 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별 각각의 계약서 모두 가능)  
 ★ 동 계약기간 중 부 계약당사자인 예술인(보조)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동 계약 당사자의 변경 발생 시, 사업주와 예술인(주)는 동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신된 계약서에 따른 피보험관리(고용보험 신고 등)를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span style="float:right">&lt;개정안&gt;</span>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공사명(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고용관리 책임자 (※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장(현장)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 일수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천 징수 액					소득 세					원					원				
지방 소득 세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span style="float:right">&lt;신설&gt;</span>			
<h2>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h2>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피보험자 수		명	
지원 대상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예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가입 양식 - 예술인

(제1쪽 앞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span style="float: right;">&lt;신설&gt;</span>			
<h2>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h2>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	노무제공 개시일	계약 보수총액(총소득)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노무제공 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예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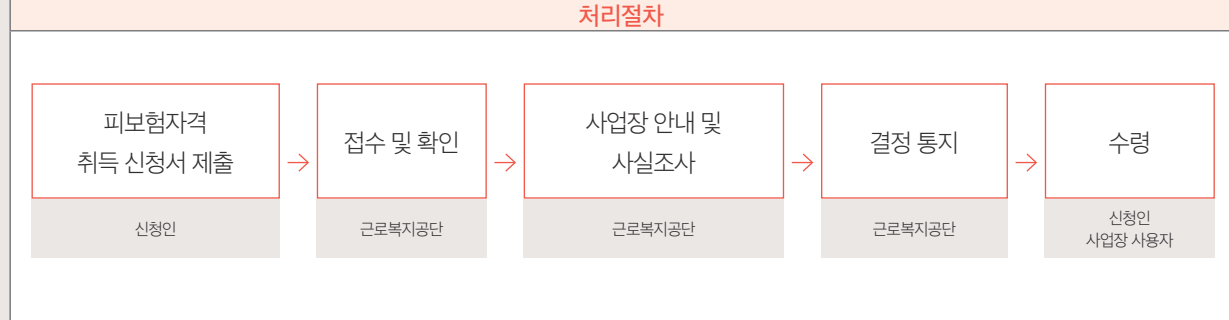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취득 신청서는 둘 이상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 금액에서 계약 기간을 나누어 월(月)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예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 항목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보수총액(총소득)을 적습니다.



(앞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의3서식] <span style="float: right;">&lt;신설&gt;</span>			
<h2>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서</h2>			<h2>신청서( 회차)</h2>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④ 임신기간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작성)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4. 22주~27주 □	5. 28주 이상 □
⑤ 출산일 (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년 월 일	⑥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⑦ 다태아(多胎兒) 여부 □ 예 □ 아니오			
⑧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 (연속하는 총 90일 중 출산 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30일 단위로 기간을 설정)	첫 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두 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세 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네 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⑨ 월평균보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이전 1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			원		

**2. 신청내용**

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확인사항**

⑫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수급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습니까?  
□ 예 (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예 (기간:      금액:      원)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2. 수급기간 동안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사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정희섭

편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TF 정철, 남희승

기획 프리비

감수 근로복지공단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홈페이지 [www.kawf.kr](http://www.kawf.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전화 02-3668-0200

디자인·제작 그래픽오션

가입부터 보장까지  
**예술인  
고용보험**